영등포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5.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5. 21.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개정(제안) 이유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본격적인 개장에 따라 대림운동장 시설 사용의 우선권을 우리 구에 소재한 축구팀·테니스팀 등 구민에게 줌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추가·조정하여 정함(안 제5조)
  -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 영등포구 대표 축구팀 및 테니스팀이 대림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림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전용사용료 납부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대림운동장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별표3)

구 분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7: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7:00~22:00	1면 기준 (2시간)

- 개인사용료와 더불어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도 사용허가 신청시로 규정함(안 제8조제4항)

● 대림운동장 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9조)

-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 영등포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의 연습을 위한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함
- 초등학생 이하와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는 100분의 30을 감면함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관악구, 양천구, 중랑구, 강서구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타 자치구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신설된 별표 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는 2002년부터 제정·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제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할 것과,

- 별표 2 비고 제6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하는 개정사항을 추가하며,

● 안 별표 3 비고 제4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수정의견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5. 27.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및 타 자치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의 견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수 정 의 견</th></tr>
<tr><td>제9조(사용료의 감면)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td><td>제9조(사용료의 감면)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td><td>제9조(사용료의 감면)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2~4.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2〕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사용료 / 구분</th><th rowspan="2">대 상</th><th rowspan="2">기본사용료 상한(1회)</th><th colspan="6">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th></tr>
<tr><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r>
<tr><td>...</td><td colspan="8">(시설별 사용료 생략)</td></tr>
</table></td><td>〔별표 2〕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제목 이하 현행과 같음)</td><td>〔별표 2〕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사용료 / 구분</th><th rowspan="2">대 상</th><th rowspan="2">기본사용료 상한(1회)</th><th colspan="6">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th></tr>
<tr><th>주1회</th><th>주2회</th><th>주3회</th><th>주4회</th><th>주5회</th><th>주6회</th></tr>
<tr><td>...</td><td colspan="8">(현행과 같음)</td></tr>
</table></td></tr>
</table>

비 고	1~5. (생략)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10. (생략)		비 고	1~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라. (현행과 같음) 7~10.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평 일	공휴일(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3월 ~ 10월 07:00~19:00	1팀 기준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7:00~22:00	1면 기준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평 일	공휴일(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개정안과 같음)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비 고	1~3. (개정안과 같음) 4.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라. (개정안과 같음) 5~6. (개정안과 같음)

관 련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자치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현황

❑ 축구장

(단위 : 원)

구분	전용사용				비 고
	체육경기		기 타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영등포구 (개정안)	***40,000***	***52,000***	***40,000***	***52,000***	***2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중랑구	57,800 (2시간) 231,000 (전용)	75,140 (2시간) 300,300 (전용)	330,000 (전용) 165,000 (반일사용)	429,000 (전용) 214,500 (반일사용)	조명사용료 별도 20,000원(2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강북구	55,000	71,500	250,000	325,000	체육경기 2시간, 기타 3시간 조명사용료 별도 22,000원(2시간)
은평구	35,000	45,500	80,000	104,000	1시간 기준 조명사용료 별도 10,000원(1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양천구	55,000	71,500	240,000	320,000	체육경기 2시간, 기타 4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강동구	100,000	130,000	500,000	650,000	체육경기 2시간, 기타 4시간
관악구	50,000 (축구)	70,000 (축구)	160,000 (4시간, 기타체육)	320,000 (9시간, 기타체육)	체육경기 2시간 조명시설 별도 6,500원(30분)
서초구	50,000	65,000	100,000	130,000	1시간 기준 조명사용료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성북구	70,000	91,000	320,000	416,000	체육경기 2시간, 기타 4시간

❑ 테니스장

(단위 : 원)

구분	전용사용		개인사용료(1면 사용)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영등포구 (개정안)	**-**	**-**	***8,000***	***10,400***	***2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서울시 청동운동장	-	-	실내 25,000~50,000 실외 8,000~16,000	30% 가산	2시간 기준
종로구	-	-	6,000	8,000	1시간 기준
은평구	10,000	13,000	-	-	조명사용료 별도 10,000원(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마포구	10,000	13,000	2,000	2,600	1시간 기준
양천구 목동 테니스장	70,000	91,000	9,000	11,700	2시간 기준 전용은 8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양천구 해누리 체육공원	24,000(크레이) 20,000(하드)	31,200(크레이) 26,000(하드)	6,000(크레이) 5,000(하드)	7,800(크레이) 6,500(하드)	
강서구	24,000~36,000 (1일 1면 기준)	31,200~47,000 (1일 1면 기준)	3,000~4,500	3,900~6,000	1시간 기준 야간·조명시설 사용시 30% 할증
강동구	20,000	26,000	4,000	5,200	2시간 기준
관악구	-	-	주간 4,000 야간 10,000	주간 6,000 야간 10,000	1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서초구	-	-	실내 19,000 실외 12,000	실내 29,000 실외 20,000	1시간 기준 조명사용료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성북구	-	-	스쿼시장 11,000	14,300	1시간 기준